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벌금 · 징역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와 벌금 및 징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의 위반사항”에 있어 조치기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관계서류의 작성에 대해 법 조항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법 제49조의2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즉시 확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다. 부과금액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미준수(법 제49조의2 제5항)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98-67호, 1998. 12. 18)

- 가. 조치기준 : 1차 경고 후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시행 명령 위반(법 제50조 제1항 · 제2항)

-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 · 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 · 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을 명할 수 있다.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 제1항의 안전 · 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시행 명령 위반
 - ①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②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위반

나. 조치기준 :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②항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절차 미준수(법 제50조 제3항)

사업주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위반행위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②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나. 조치기준 : 1차 경고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②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준수(법 제50조 제4항)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위반행위 :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사업주

② 근로자

나. 조치기준 :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기한내 불이행시 즉시 과태료 부과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②항은 5만원 이하의 과태료

6.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법 제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 또는 제5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도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가. 조치기준 : 1차 경고 후 불응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나. 부과금액 : 500만원 이하의 벌금

7.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거부·방해·기피 하거나 또는 허위 답변한 경우(법 제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 또는 제5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도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을 행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 : ① 허위답변을 한 경우

② 답변을 방해한 경우

③ 답변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나. 조치기준 : 1차 경고 후 불응시 과태료 부과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②항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③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보고·출석 의무 위반 및 허위보고(법 제51조 제2항)

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가. 조치기준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 동일의무에 대해 2회 이상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나. 부과금액 : 500만원 이하의 벌금

9. 사용중지·시설의 개선 등의 명령위반(법 제51조 제6항)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받은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조치기준 :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나. 부과금액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 작업중지 명령위반(법 제51조 제7항)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가. 조치기준 :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1.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명령 등 위반(법 제51조 제8항)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명령 위반
- 나. 조치기준 : 동 규정내용을 주지시키고, 이를 준수토록 지시하되,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 해고 기타 불리한 처분 금지 위반(법 제52조 제2항)

사업주는 제 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가. 조치기준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3. 지도사가 등록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법 제52조의4 제1항)

지도사가 그 직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등록없이 업무를 행한 기간
 - ① 1년 이상인 경우
 - ② 6개월 이상인 경우
 - ③ 3개월 이상인 경우
 - ④ 3개월 미만인 경우
- 나. 조치기준 :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②항은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③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④항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제공 : 서울지회 동부출장소 조영수 소장)